

공고 제 1 호

직권조치결과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4일

아산면장



직권조치사항
직권조치일자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일자
박 *용	박 *용 1969-03-26	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24